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6 - 72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시설을 총괄 관리·운영할 시설장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5급 정원을 59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, 6급 이하 계를 1,311명에서 1,310명으로 감원 (안 별표 3)
- 나.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(부칙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(정원의 관리)부터 제30조(정원의 규정)까지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6. 8. 4. ~ 8. 10. 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5급 및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급별 \ 기관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등
5급	60	35		9	16
6급 이하 계	1,310	1,310			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8년 6월 30일
까지 연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동
(생 략)						(현행과 같음)					
5급	59	34		9	16	5급	60	35		9	16
6급 이하 계	1,311	1,311				6급 이하 계	1,310	1,310			
(생 략)						(현행과 같음)		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[별표3] 6급 이하 계 정원 1명 감소와 5급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차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1호 해당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연평균 1억원 미만 해당

추가비용	연급액		비고
	5급	6급	
12,004천원	78,672천원	66,668천원	'16년 예산편성지침,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서은영
연락처	02-3153-8216